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13
----------	------

2020년 12월 17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10월 15일, 이호대 의원외 13명

2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6일

3. 상정일자

○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

(2020년 12월 17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호대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」 상 오기(誤記)를 바로잡고, 용어 사용을 일관성 있게 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개정 대상 조문을 어문 규범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함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이호대 의원 등 14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913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중 오기(誤記)를 바로 잡고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위해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수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최근 법제처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, 어문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,

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, 어려운 한자어와 예스러운 말투, 어색한 번역 투 표현으로 가득한 법령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‘법령용어 순화사업’과 ‘법률 한글화 사업’ 및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’을 진행해 왔습니다.¹⁾
-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법적 간결성 및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는 것으로,

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.

1) 법제처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제9판)」, 2019.12.

나.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

○ 동 개정조례안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제2조제2호의 “한다)를”을 “한다)을”로 오기를 수정하고,

제3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제1호의 “학교시민들”을 “학교시민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인바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.

서울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6017, 2020.11.10.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한다)를”을 “한다)을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학교시민들”을 “학교시민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학교시민들”을 “학교시민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학교민주시민교육"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(이하 "학교시민"이라 한다)를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, 가치,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책무) ① (생 략)</p> <p>② 교육감은 학교시민들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 <p>제9조(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) ① (생 략)</p> <p>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학교시민들의 자치 활동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</p> <p>2. ~ 5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한다)을 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학교시민----- 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학교시민-----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